

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규정

제정 2021. 4. 29.

제6차 개정 2026. 3. 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조(편제) 및 제31조의9(경험학습 학점인정)에 의거 상지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성인학습자 전형 또는 만학도 전형으로 입학한 성인학습자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9.16., 2023.3.6., [2026.3.13.](#))

제1조의2(대상) ① 미래라이프대학 소속 학생

② 2026학년도 이후 성인학습자 전형 또는 만학도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

[조 신설 2026.3.13.]

제2조(수업) 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되, 제1조의2 대 상학과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 (개정 2026.3.13.)

② 수업은 주중 주야간 또는 주말(토요일)에 운영한다. 다만, 총장이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계절제 수업, 시간제 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 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.

③ 전공과목 중 일부는 e-러닝 또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실습 교과목을 제외한 대면수업의 경우 하이플렉스 수업(대면수업, 실시간영상송출 수업, 녹화영상 대체 수 업을 동시에 진행)으로 진행할 수 있다. e-러닝, 블렌디드 러닝 교과목은 학과의 교과과정표 에 따라 전공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 (개정 2026.3.13.)

④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 및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 (개정 2023.3.6.)

⑤ 상위학년의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장의 승인하에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23.3.6.)

⑥ 학내에서 개설된 e-러닝 강의는 학기당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, 취득 성적은 해당 학기 평균평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. (신설 2023.3.6.)

제3조(출석) ① 대면강의를 하이플렉스 수업으로 기간 내에 이수한 경우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3.3.6., [2026.3.13.](#))

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3.3.6.)

1.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: 해당기간
2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: 해당기간

3.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한 직장 내 위급상황인 경우 : 1일(학기당 1회 한정)
4. 그 외 공결은 수업관리규정 제15조의2(공결처리)에 의거 결석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.
5.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대학 학장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신설 2023.3.6.) (개정 2026.3.13.)

[제목개정 2023.3.6.]

제4조(휴학) 학칙 제23조를 따르되, 질병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학 중 휴학기간이 총 4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과 미래라이프대학장을 경유하여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23.3.6.)

제5조(학기구분)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 2학기로 나눈다.

- ② 이와 별도로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따로 둘 수 있으며, 교육상 필요에 따라 1년 2학기제 + 계절학기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경험학습 인정제) ① 경험학습 인정제는 학생이 신청하고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경험학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③ 본교 입학 이전 국내외 타 학교 · 연구기관 · 산업체에서 학습 · 연구 · 실습 등이 전공과 관련될 경우 경험학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학점인정 범위는 (별표1)에 명시된 범위로 한다. (개정 2025.9.2.)
- ④ 경험학습 인정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경우 2분의 1 이내, 제3항의 경우 4분의 1 이내로 한다.
- ⑤ 경험학습 인정을 위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4.3.14.]

제7조(졸업요건) 학칙 제35조에 의하며,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8학기 이상 등록한자, 다만, 조기 졸업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(개정 2023.3.6.)
2. 130학점 이상 취득자
3. 삭제 (2023.3.6.)
4. 삭제 (2023.3.6.)

제8조(장학금) ① 장학금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.

- ② 장학금 지급 규정 이외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민간기업 및 기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한 성인학습자의 장학금은 총장의 승인하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 단, 중복지원 인정 범위는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한다. (개정 2023.3.6., 2023.3.31., 2026.3.13.)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시행세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교내장학금(평생교육장학)을 수강

학점 기준 3학점 이하일 때 6분의 1, 4-6학점일 때에는 3분의 1, 7-9학점일 때에는 2분의 1, 10학점일 때에는 5분의 3, 17학점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한다. (신설 2023.3.31.) (개정 2026.3.13.)

제9조(K-MOOC 강좌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) 본교의 성인학습자는 재학기간 중 총장이 승인 하여 이수한 K-MOOC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, K-MOOC 강좌의 수강신청 및 교과구분,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6.3.13.)

1. K-MOOC 이수 교과목의 학점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소속학과로 이수증을 제출하며, 소속 학과에서는 본교 장바구니 신청기간 이전에 수강신청(학점인정) 명단을 학사 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K-MOOC 신청학점은 본교 정규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23.3.6., 2026.3.13.)
2. 이수한 교과목은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.
3.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.
4. 학기당 최대 3학점,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을 인정한다.
 - 가. 학습인정 시간이 650분(13주×50분) 이상 1,300분 미만인 경우 : 1학점 (개정 2023.3.6.)
 - 나. 학습인정 시간이 1,300분 이상 1,950분 미만인 경우 : 2학점 (개정 2023.3.6.)
 - 다. 학습인정 시간이 1,950분 이상인 경우 : 3학점
5.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에 한한다.
6. K-MOOC 강좌의 학점은 P(Pass)로 평가하고, 신청한 학점은 신청한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한다.

② **삭제** (2026.3.13.)

[본조신설 2022.9.16.]

부 칙 (기획예산팀-275, 2021.04.29.)

이 규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5301, 2022.09.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평생교육융합대학의 재학생으로 동 규정 개정 시행 전 2022학년도 2학기에 K-MOOC 강좌를 이수한 학생의 학점은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2022학년도 2학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54, 2023.03.06.)

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714, 2023.03.31.)

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693, 2024.03.1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같은 규정 개정 시행 전 2023학년도 1학기에 경험학습 인정제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이 개정 규정과 동일한 기준의 경험학습 학점인정 범위를 적용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908, 2025.09.0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표1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규정 개정 시행 전인 2023학년도 1학기부터 경험학습인정제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이 개정 규정과 동일한 기준의 경험학습 학점인정 범위를 적용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685, 2026.03.13.)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(신설 2024.3.14.) (개정 2025.9.2.)

경험학습 학점인정 기준표

| 구분 | 기관 | 인정학점 | 비고 |
|--|--|---|---|
| 형식 교육 |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 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| 졸업학점의 1/2 이내 | 별도의 양식인 학점인정 신청서에 의거 학점처리 |
| | -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 한 학점•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• 선행학습인정이 적용되는 학위과정은 전문학사학위, 학사학위에 한함(석사학위 이상은 제외) | 졸업학점의 1/2 이내 | 별도의 양식인 학점인정 신청서에 의거 학점처리 |
| | - 「병역법」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*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제출 시(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) | 6학점 | 원격교육학기당 3학점 이내 (별도의 양식인 학점인정 신청서에 의거 학점처리) |
| 비형식 교육 | -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| 학기당 10학점 최대 20학점 | - |
| | - 숙련기술장려법」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| 15학점 | - |
| | -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| 금상 (6학점) | - |
| | | 은상 (3학점) | - |
| | -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국제 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| 금상 (15학점) | - |
| | | 은상 (12학점) | - |
| | 동상 (9학점) | - | |
| -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 제4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| 30시간 (1학점) | 수료증&교육내용 | |
|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에 따른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, 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| 졸업학점의 1/4 이내 |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최신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의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학점인정 | |
| 무형식 교육 | - 국내.외의 다른 학교,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, 연구, 실습 경험 및 산업체 근무경험 (3년 이상 근무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) *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기준 | 졸업학점의 1/4 이내 | 필기 또는 실시시험 후 학점 인정 (학부(과) 학점인정심의위원회) |
| | -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군복무경험 (사회봉사, 인성함양, 리더십 과목으로 학점 인정) | 3학점 이내 | 군경력증명서 (별도의 양식인 학점인정 신청서에 의거 학점처리) |

※ 별표 1 기준의 인정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학점인정 함